

국 토 교 통 부



수신 경기도지사

(경유)

제목 관원질의 회신(건축분야 건축사보의 업무범위)

- 1. 경기도건축디자인과-13413(2021.6.29)호와관련입니다.
- 2. 질의요지
 - 「건축법시행령」 제19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에서 전체공 사기간동안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축분야 건축사보의 업무범위에 토목 •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의 감리업무를 확인・검토・지도・감독 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?

3. 답변내용

- 「건축법」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라 "공사감리자"란 자기의 책임(보조자의 도움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)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,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, 품질관리・공사관리・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・감독하는 자를 말하며,「건축법」제25조제1항은 건축주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・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사감리자로하여금 공사감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또한,「건축법시행령」제19조제5항에서는 상주감리 현장에서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, 토목・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 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.
- 따라서, 공사감리자가 자기책임 하에 공사감리를 진행하되 상주감리에 대해서는 필요시 분야별 건축사보를 두도록 한 법령의 취지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「건축 공사 감리세부기준」의 [별표1] 단계별 감리업무 체크리스트에 총괄 감리책임자와 건축사보(공종별 감리책임자)가 서명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.
- 토목·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가 서명을 한 경우에는 해당 공종별 건축사 보에게 책임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 끝.

※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직원 **김기훈** 공업사무관 **김진우** 건축정책과장 **김성호 김성호**

협조자

시행 건축정책과-9980 (2021. 9. 15.) 접수 건축디자인과-20071 (2021. 9. 15.)

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어진동) 418호 / http://www.molit.go.kr

전화번호 044-201-4752 팩스번호 044-201-5574 /rlgn1004@molit.go.kr / 대국민 공개

함께 지킨 청렴의식, 함께 누릴 국토교통